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35

발의연월일: 2024. 12. 2.

발 의 자:이용우·권향엽·한정애

민병덕 · 김남근 · 김한규

백혜련 · 강유정 · 백승아

모경종 • 박주민 • 박민규

박홍근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은 상수원관리구역 내의 신축·증축·개축을 포함한 건축 행위, 입목(立木) 재배, 토지의 굴착·성토(盛土) 등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음.

이러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보상하고자 물이용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에게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지원, 육영·주택개량 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하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는 정작지역주민이 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하여 효과적인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음.

이에, 지역주민대표가 포함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수계관리위

원회의 심의와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및 제25조의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심의"를 "심의와 제25조의2에 따른 지원협의체 협의"로 한다.

제5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지원협의체) ① 지원협의체는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대표 또는 지역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 2.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5.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②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정 안 혂 행 개 제23조(주민지원사업) ① 시장· 제23조(주민지원사업) ①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 다)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7조에 따른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와 제25조 야 한다. 의2에 따른 지원협의체 협의--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2(지원협의체) ① 지원협 의체는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대표 또는 지역의 특별자치시 • 특별 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구 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 2.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 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5.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아나한 자
- ②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